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발의자 : 이필용의원의 6인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4년 10월 13일

○ 회부일자 : 2004년 10월 14일

다. 상정일자 : 제232회 임시회

○ 2004년 10월 26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의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필용의원)

가. 제안이유

○ 조직개편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성과를 정비하고
일부 현실에 맞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기획행정위원회 직무관련 소관 성과중 자치행정국으로
편입된 총무과를 삭제하고 충북개발연구원 추가

○ 관광건설위원회 직무관련 성과중 바이오산업 추진단 추가

- 특별위원회 설치 등 일부조항에서 “본회의의” 의결이나 “도회의의” 의결로 되어 있는 조문을 “본회의” 의결로 자구 정비(제7조)

3. 검토보고 요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승진)

-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증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조직개편으로 자치행정국으로 편입된 총무과를 삭제하고, 충북개발연구원과 바이오산업추진단을 각각 기획행정위원회와 관광건설위원회로 추가 정비하며,
- 특별위원회 설치 또는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 연장시, 본회의의 또는 도의회로 되어 있는 조문을 본회의로 잘못되어 있는 자구를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증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7
----------	-----

발의연월일 : 2004년 10월13일

발 의 자 : 이필용의원외 6인

제안이유

- 조직개편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성과를 정비하고 일부 현실에 맞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기획행정위원회 직무관련 소관 성과중 자치행정국으로 편입된 총무과를 삭제하고 충북개발연구원 추가
- 관광건설위원회 직무관련 성과중 바이오산업 추진단 추가
- 특별위원회 설치 등 일부조항에서 "본회의의" 의결이나 "도회의의" 의결로 되어 있는 조문을 "본회의" 의결로 자구 정비(제7조)

참고사항

- 신·구 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충청북도의회 조례 제 호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가목중 “총무과”를 삭제하고 다목을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다. 충북개발연구원 소관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제5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바이오산업 추진단 소관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중 “본의회의”를 “본회의”로, “의결로
서”를
“의결로써”로 한다.

제7조제4항 단서중 “도의회의”를 “본회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p> <p>① (생략)</p> <p>② (생략)</p> <p>1. (생략)</p> <p>2. 기획행정위원회</p> <p>가. 공보관실, 총무과,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한사항</p> <p>나. (생략)</p> <p><신 설></p> <p>3. (생략)</p> <p>4. (생략)</p> <p>5 (생략)</p> <p>가. (생략)</p> <p><신 설></p>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기획행정위원회</p> <p>가.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한사항</p> <p>나. (현행과 같음)</p> <p>다. 충북개발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3. (현행과 같음)</p> <p>4. (현행과 같음)</p> <p>5. (현행과 같음)</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바이오산업 추진단 소관에 관한 사항</p>	<p>제7조(특별위원회) ①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생략)</p> <p>④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의회에서 의결될 때 까지 존속한다. 다만 그 사안에 대한 심사대상이 수시로 발생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의결로 그 존속기간을 정 할 수 있다.</p>	<p>제7조(특별위원회) ①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의회에서 의결될 때 까지 존속한다. 다만 그 사안에 대한 심사대상이 수시로 발생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그 존속기간을 정 할 수 있다.</p>	